

인천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0가합65158 판결 [공사대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주식회사 D

3. E

4. F

5. G

6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율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명휘
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,

가. 원고 A에게 266,164,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원고 B에게 98,214,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 A의 피고 E, H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F, G,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, 원고 A과 피고 E,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, 원고 B와 피고 F, G,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원고 A의 청구 :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, 피고 H는 위 266,164,672원 중 254,775,000원, 피고 E는 위 266,164,672원 중 22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원고 B의 청구 :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F, G, H는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98,214,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당사자들의 지위

1)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H로부터 인천 서구 I, J, K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(이하 '이 사건

공사'라 한다)를 도급받은 회사이고,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.

2) 원고 A은 2018. 1. 11.부터 2018. 8. 22.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'이라 한다), 원고 B는 2018. 1. 4.부터 2019. 11. 11.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'이라 한다).

나.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직불합의

1) 원고 A은 2020. 6. 16.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과 사이에 '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266,164,672원이고, 피고 주식회사 D은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'는 취지로 기재된 '직불확인서'를 작성하였다.

2)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과 사이에 '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98,214,360원이고, 피고 주식회사 D은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'는 취지로 기재된 '직불확인서'를 작성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공사대금 266,164,672원, 원고 B에게 공사대금 98,214,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. 11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주식회사 D은 직불확인서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인 피고 H 명의로 된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대물변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직불확인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D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, 위 직불확인서에는 ‘하수급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대금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금을 확인하고, 수급사업자의 직불 요청 자료를 제출받은 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는 확인한다’, ‘공사대금을 직불함에 있어 원도급자, 수급사업자,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’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 주식회사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직불확인서가 피고 H의 대물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원고 A의 피고 E, H에 대한 청구

갑 제6, 9,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① 원고 A이 2020. 2. 11.경 피고 E와 사이에 ‘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호’에 관하여 분양대금 200,000,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, ② 원고 A이 2020. 6. 16. 피고 H와 사이에 ‘인천 중구 N에 있는 O호’, ‘인천 중구 N에 있는 P호’에 관하여 대물변제 합의를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H와 사이에 ‘인천 중구 N에 있는 O호’에 관하여 분양대금 131,687,500원, ‘인천 중구 N에 있는 P호’에 관하여 분양대금 123,087,500원으로 정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 E, H는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, 원고 A과 위 피고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은 원고 A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하거나 대물변제받기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한 점, 담보제공약정 또는 대물변제계약은 연대보증계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, H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다만, 원고 A은 담보제공약정 또는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와 같은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).

4. 원고 B의 피고 F, G, H에 대한 청구

갑 제7, 11,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① 원고 B가 2020. 2. 11.경 피고 F, G와 사이에 ‘인천 Q에 있는 R호’에 관하여 분양대금 106,095,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, ② 원고 B가 2020. 6. 16. 피고 H와 사이에 ‘인천 중구 S에 있는 T’에 관하여 대물변제 합의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H와 사이에 ‘인천 중구 S에 있는 T’에 관하여 분양대금 106,425,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 F, G, H는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, 원고 B와 위 피고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은 원고 B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하거나 대물변제받기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한 점, 담보제공약정 또는 대물변제계약은 연대보증계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, G, H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다만, 원고 B는 담보제공약정 또는 대물변제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와 같은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)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C,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, 원고 A의 피고 E, H에 대한 청구, 원고 B의 피고 F, G,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정숙, 판사 김성대, 판사 박건희